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상계획 공고 방법에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추가》

■ 윤재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582호)

2025.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윤재옥의원 대표발의(제2211582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보상계획 공고 방법에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추가 (안 제15조제1항)	2
나. 부칙	10

I. 윤재옥의원 대표발의(제2211582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윤재옥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7. 18.

다. 회 부 일 : 2025. 7. 2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토지 등의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미디어 이용방식이 인터넷 중심으로 변환된 상황에 맞추어 일간신문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상계획의 공고방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익사업의 보상계획의 공고방법에 일간신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하여 보상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3. 검토의견

가. 보상계획 공고 방법에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추가
(안 제1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 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 ----- ----- ----- ----- ----- -----일간신문과 인터넷 <u>홈페이지</u> ----- ----- -----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4조제1항¹⁾에 따르면, 사업시행자²⁾는 공익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³⁾의 수행을 위하여 같은 법 제20조⁴⁾에 따른 사업인정(이하 “사업 인정”이라 함)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⁵⁾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같은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이하 “보상계획”이라 함)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2항 단서6)에 따라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공고 또는 통지의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함.

한편, 현행법 제26조제1항7)에 따르면,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경우 같은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에 관한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와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에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임⁸⁾.

개정안은 이와 같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절차 중 ‘보상계획의 공고’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는 현행 공고 방법에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의 법령해석⁹⁾에 따르면, 현행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과정에서 미등기 등의 사유로 미처 확인되지 않은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을 알리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음.

한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¹⁰⁾에 따르면, ‘일간신문’은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반적인 수용·보상 절차는 ‘참고 1’ 참조.

9) “(중략) 토지보상법 제15조제1항에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과정에서 미등기 등의 사유로 미처 확인되지 않은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 해당 이해관계자에게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을 알리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인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내용에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될 필요는 없고, 보상대상에 포함되는 토지 및 물건의 범위 등이 포함되어 해당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가 권리 행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공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22-0069, 2022. 6 .30.)

1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문”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을 의미하며, 전자간행물인 ‘인터넷신문’과는 구별되는데,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¹¹⁾이라는 점에서, 보상계획 공고에 관한 법정 방법을 일간신문 공고로 한정하는 경우 보상계획이 공고되는 일자의 일간신문을 접하지 못한 이해관계인이 보상계획 관련 정보를 접할 가능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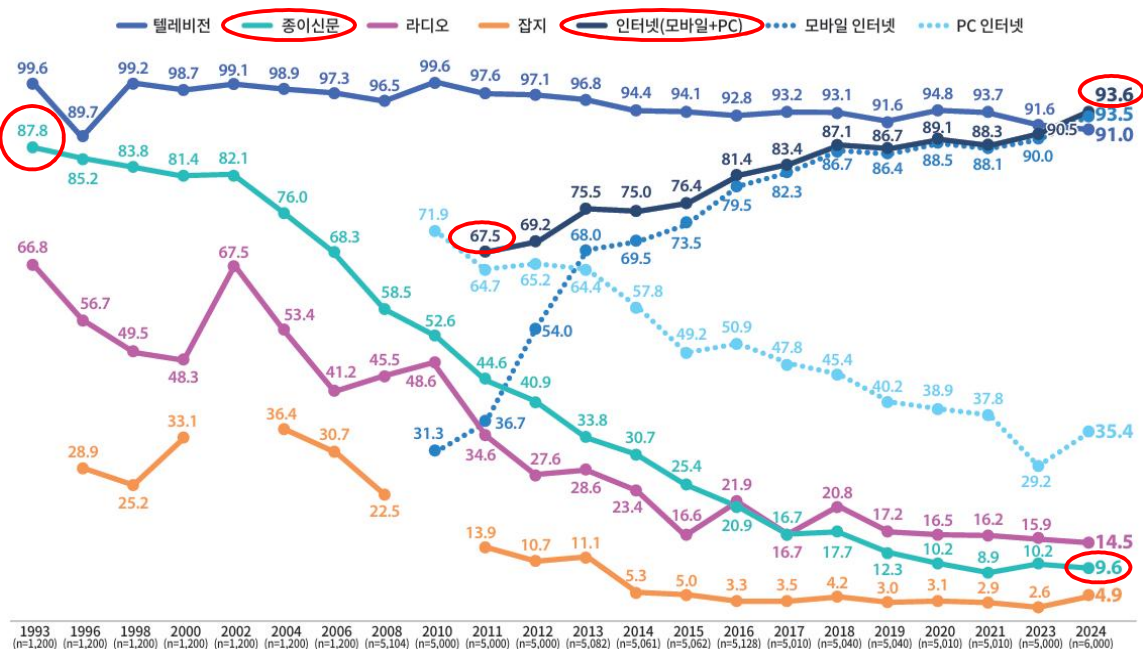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는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1)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4년 언론수용자 조사」 결과 중 ‘4대 매체 및 인터넷 이용률 추이’에 따르면, ‘종이신문’의 이용률은 1993년 87.8%에서 2024년 9.6%로 78.2%p 하락하였고, 모바일 이용을 포함한 ‘인터넷’의 이용률은 2011년 67.5%에서 2024년 93.6%로 26.1%p 증가하였음.

〈4대 매체 및 인터넷 이용률 추이(1993~2024년)〉

(단위: %)



※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 「2024년 언론수용자 조사」, 2025. 2. 3.

반면, 이해관계인이 일간신문을 거치지 않고도 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¹²⁾를 통하여 보상계획 공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정보 접근의 편의성이 제고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정보 전달을 통해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을 알리기 위한 보상계획 공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상계획 공고에 관한 법정 방법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상계획 공고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이해되며,

사업시행자 등으로 하여금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명시한 입법례¹³⁾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2)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LH 보상정보'라는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한국부동산원의 경우 위탁받은 보상업무와 관련된 보상계획을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알림마당-보상정보'를 통해 공고하고 있음.

1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7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②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2. 도시재생사업의 지정 및 관련 계획의 수립·인가 내용
3.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정 등을 정하는 경우 그 내용
2. 사업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3. 복합개발계획,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인가 내용
4. 그 밖에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한편, 현행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¹⁴⁾는 손실보상의 현금 보상 원칙의 예외로서,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일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대토보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¹⁵⁾는 대토보상의 기준을 공고하는 방법으로 ①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현금보상 등)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현금보상 등)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3. 보상기준 등의 공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②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토보상 기준의 법정 공고 방법의 경우에도 안 제15조제1항과 동일하게 ‘일간신문’뿐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방법을 명문화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국민의 권리 보장이라는 보상계획 공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으로,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 변화를 고려할 때 보상 관련 정보 전달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과 일간신문 이용자 및 정보취약계층 등을 고려할 때 기존 공고 방법의 유지 필요성도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견이며,

2020년에 미디어 환경 및 이용실태 변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된 정책 공고 방법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6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한 사례¹⁶⁾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6) 정부는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대통령령 제 31176호, 2020.11.24. 일괄개정·시행)을 통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기존의 관보나 일간신문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의 공고 방법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한 바 있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참고 2’ 참조.

나. 부칙

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계획의 공고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안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정비 등 법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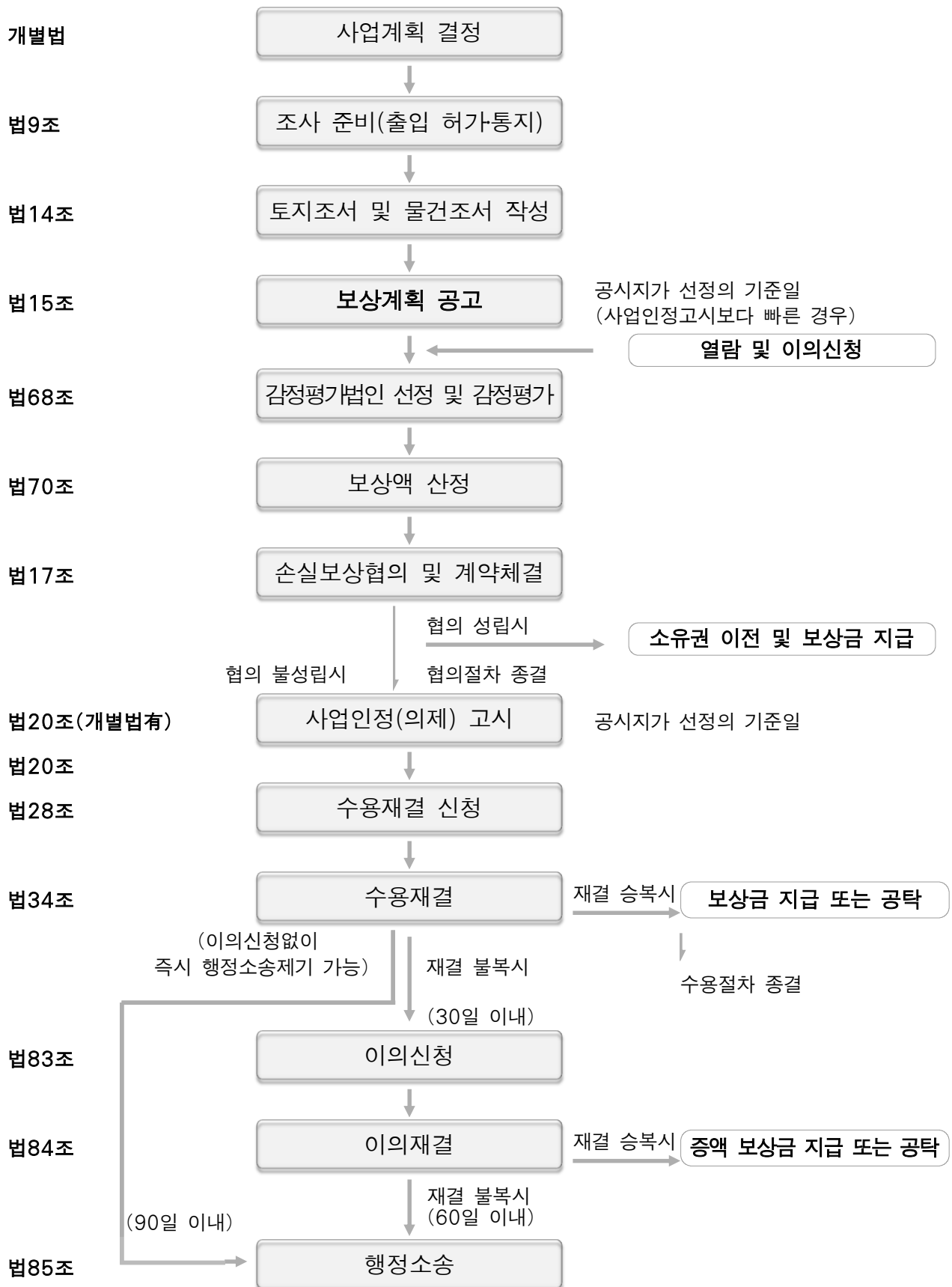
개정안 부칙 제2조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적용례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미 보상계획이 공고된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문 의 처
02)6788-5578

참고 1

「토지보상법」 상 수용 · 보상 절차

자료: 국토교통부



참고 2

법정공고 방식 확대 관련 대통령령 일괄 개정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연번	법령명	개정 전	개정 후
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관보 및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관보에 공고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일반일간신문에”	“일반일간신문, 공보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변경하였을 때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변경했을 때에는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일간신문에”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5	「경관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해당 경관계획의 수립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
6	「공연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7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8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해당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10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제3항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11~66	이하 중략		
67	「하천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68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일간신문에 하여야”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야”
69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 제14조의9제1항	“중앙 또는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일간신문, 관보, 공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